



2026 노인학대예방교육

명품요양원 · 종사자 인권·학대예방 교육자료

출처: 보건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(2025.6. 발간)

노인학대란?



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적·정서적·성적·경제적 으로
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,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
방임·유기·자기방임 을 말합니다.

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 제4호 · 제39조의9

신체적 학대

정서적 학대

성적 학대

경제적 학대

방임

유기·자기방임

노인학대는 위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. 각 유형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.

노인학대 현황 — 2025년 기준



26,578건

노인학대 의심 신고

전년 대비 +16.8%

7,973건

학대 판정 (역대 최다)

전년 대비 +11.2%

88.7%

가정 내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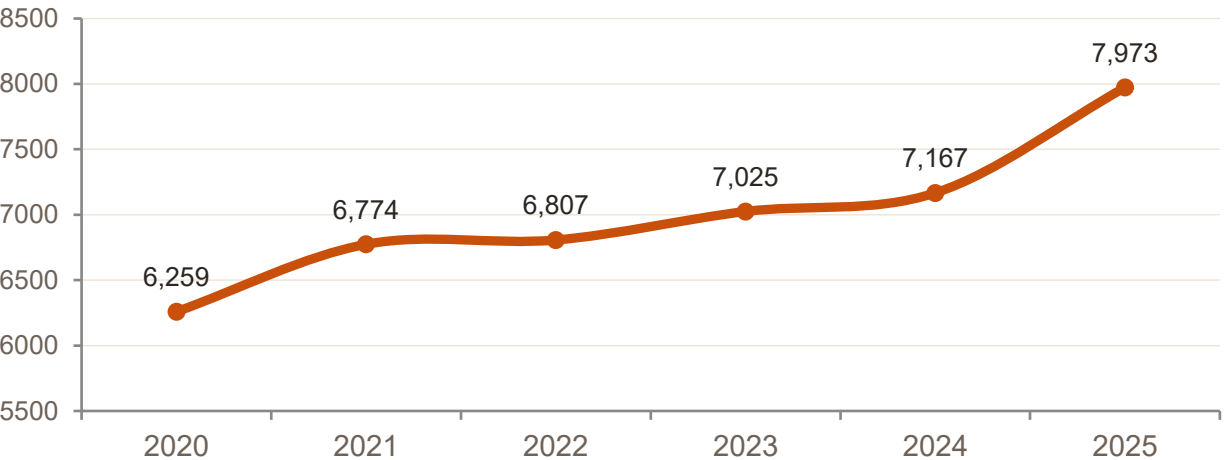
시설 7.7% · 이용시설 1.1%

76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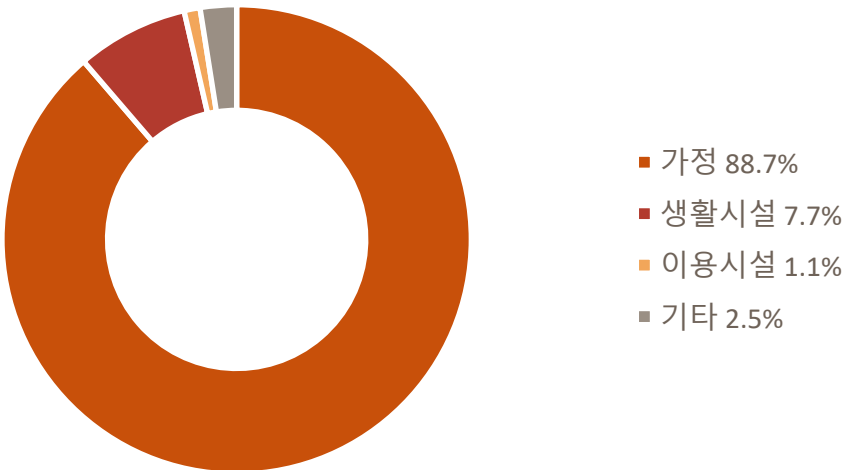
피해자 중 여성 비율

70대 42.3% 최다

학대 판정 건수 추이 (5년째 우상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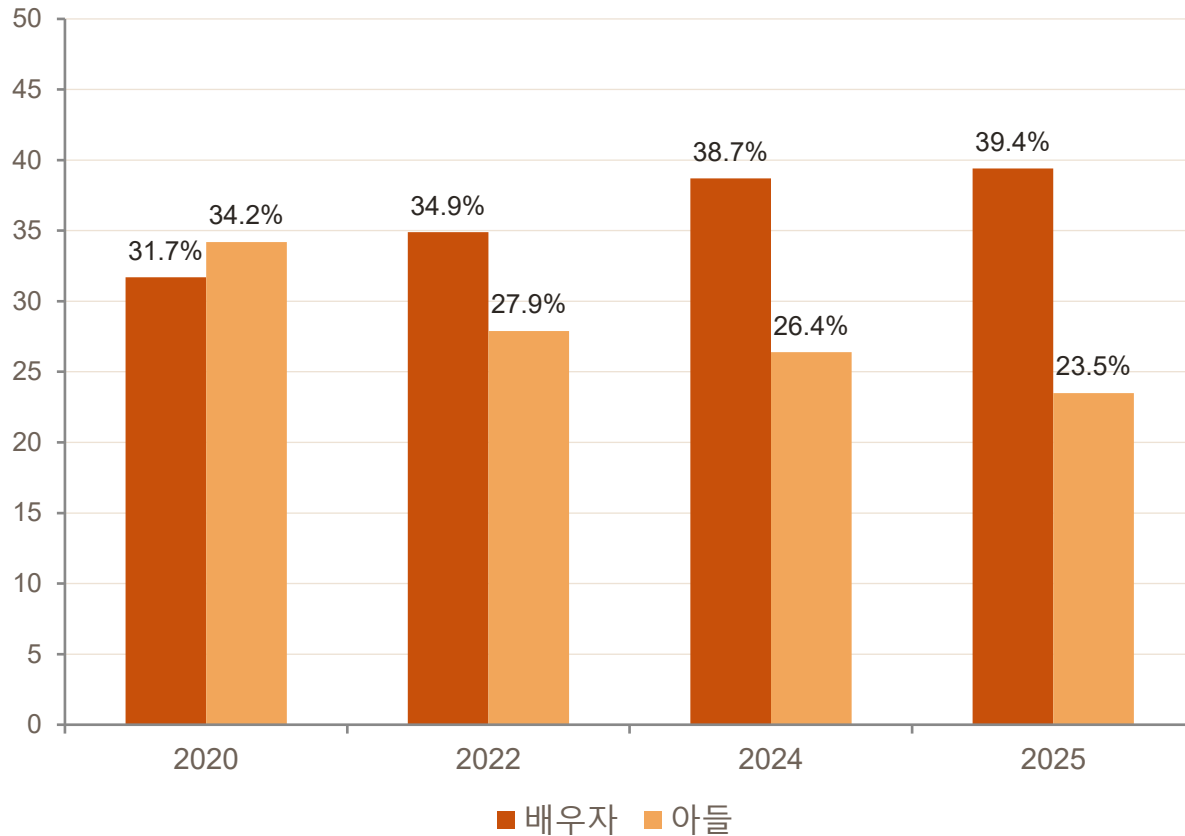
학대 발생 장소



누가, 어디서 확대하나 — 변화하는 양상



최다 가해자: '아들' → '배우자'로 이동



노노(老老) 학대 증가

노인부부 가구가 늘며 배우자 간 돌봄 부담·스트레스가 극에 달함. 학대 5건 중 2건이 배우자에 의해 발생.



피해자·가해자 고령화

피해 노인의 51.4%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. 다수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학대에 매우 취약.

노인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



정의 물리적 힘 또는 도구로 노인에게 신체적·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

대표적 학대 행위

- 꼬집거나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
- 강제로 신체를 억압·결박하는 행위
- 기저귀 교체 시 거칠게 다루거나 방치
- 약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위험하게 투약

예측 징후 (이렇게 보이면 의심)

- 설명되지 않는 상처·멍·골절·화상
- 팔목·발목에 결박 자국
- 병원·약 복용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함

노인학대 유형 ② 정서적 학대



정의 비난·모욕·위협·무시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대표적 학대 행위

- 욕설·고함·반말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
- 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음
- 다른 어르신 앞에서 면박·창피를 줌
- 원치 않는데 거실·복도에 방치

예측 징후 (이렇게 보이면 의심)

- 불안·우울·위축된 모습
- 특정 종사자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함
- 갑자기 말수가 줄고 식사를 거부

노인학대 유형 ③ 성적 학대



정의 성적 수치심 유발, 성희롱·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대표적 학대 행위

- 기저귀 교체·목욕 시 불필요한 노출
-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농담
-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
- 사생활(목욕·배변)을 보호하지 않음

예측 징후 (이렇게 보이면 의심)

- 목욕·기저귀 케어 때 극도의 불안
- 특정 상황·사람을 두려워함
- 이유 없는 위축과 회피 반응

노인학대 유형 ④ 경제적 학대



정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·권리를 빼앗거나 경제적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

대표적 학대 행위

- 노인의 돈·물품을 동의 없이 사용
- 연금·용돈을 가로채는 행위
- 후원금·기부물품을 임의 처분
- 재산 관련 결정을 강요하거나 위조

예측 징후 (이렇게 보이면 의심)

- 개인 물품·소지품이 자주 사라짐
- 용돈·간식을 받지 못함
- 면회·외부 연락을 차단당함

노인학대 유형 ⑤ 방임



정의 부양·돌봄 의무를 거부·불이행하여 노인의 의식주·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

대표적 학대 행위

- 식사·수분·영양을 제대로 제공 않음
- 기저귀를 장시간 교체하지 않고 방치
- 필요한 의료·투약 처치를 미룸
- 위생·청결 관리를 소홀히 함

예측 징후 (이렇게 보이면 의심)

- 탈수·체중감소·영양실조
- 욕창·피부질환·악취
- 더러운 의복·침구를 방치한 상태

노인학대 유형 ⑥ 유기·자기방임



정의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거나(유기),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돌봄을 포기하는 행위(자기방임)

대표적 학대 행위

- 입소 후 면회·연락을 일절 끊음
- 병원·시설에 노인을 두고 사라짐
- 퇴소 절차 없이 보호를 거부
- 건강·안전을 위협하는 자기방치 묵인

예측 징후 (이렇게 보이면 의심)

- 가족 연락이 장기간 두절됨
- 퇴원·전원 시 인수자가 없음
- 스스로 식사·투약·치료를 거부

노인학대의 법령 및 처벌 — 노인복지법



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

7년 이하 징역 또는
7천만원 이하 벌금

성적 학대 행위

10년 이하 징역 또는
1억원 이하 벌금

정서적 학대 · 노동 강요 · 구걸 행위

5년 이하 징역 또는
5천만원 이하 벌금

방임 · 유기 · 금지행위 위반

3년 이하 징역 또는
3천만원 이하 벌금

시설 종사자 주의 어르신 상태를 제때 살피지 못해 사망·상해에 이르면 업무상과실치사·치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, 그 형은 단순 과실치사보다 무겁습니다.

최근 시설 학대 사례 — 2025년 실제 보도



2025.11 · 인천지법 판결

기저귀에 대변 묻는다는 이유로 학대

요양보호사가 70대 입소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 학대. 시설장은 학대 CCTV가 지워지도록 저장 기간을 60일→30일로 몰래 변경 → 증거인멸로 벌금형.



2025.05 · 경기 남양주

병원 이송 미루다 입소자 사망

혈변·설사 증상을 보인 80대 어르신을 3주 가까이 방치한 끝에 병원 이송 후 사망. 입원 시 장기요양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점이 이송 지연의 배경으로 지목됨.



2025.05 · MBC 보도

침대에 강제 결박 · 부실 급식

입소 노인을 침대에 강제로 묶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. 건더기 없는 멀건 국 등 부실한 식사가 일상으로, 건강보험공단·지자체가 현장조사에 착수.

시설 학대는 통계상 8%대에 불과하지만,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'빙산의 일각'이라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.



우리 하루 일과 중
일어나는 노인학대가
무엇이 있을까요?

01 취침시간

이렇게 지켜주세요

- ✓ 빨리 자라고 재촉하거나 불을 강제로 끄지 않기
- ✓ 기저귀·체위 변경을 귀찮아하지 않기
- ✓ 수면을 위해 임의로 결박하지 않기



02 기상시간

이렇게 지켜주세요

- ✓ 억지로 깨우거나 거칠게 일으키지 않기
- ✓ 휠체어·보조기구로 옮길 때 충분히 설명하기
- ✓ 본인 속도를 무시하고 서두르지 않기



03 기저귀 케어시간

이렇게 지켜주세요

- ✓ 대소변을 이유로 면박·짜증 내지 않기
- ✓ 장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때 교체하기
- ✓ 사생활을 가려 수치심을 주지 않기



04 식사시간

이렇게 지켜주세요

- ✓ 식사를 재촉하거나 억지로 떠먹이지 않기
- ✓ 남겼다고 핀잔 주지 않기
- ✓ 연하 곤란 어르신께 맞는 식이 제공하기



05 목욕시간

이렇게 지켜주세요

- ✓ 불필요한 노출로 수치심 주지 않기
- ✓ 물 온도·속도를 어르신께 맞추기
- ✓ 거칠게 다루거나 재촉하지 않기



06 프로그램시간

이렇게 지켜주세요

- ✓ 참여를 강요하거나 배제하지 않기
- ✓ 능력을 비하하는 말 하지 않기
- ✓ 원치 않는 활동을 억지로 시키지 않기



07 산책시간

이렇게 지켜주세요

- ✓ 귀찮다는 이유로 외출을 거부하지 않기
- ✓ 이동 시 안전하게 보조하기
- ✓ 날씨·건강 상태를 충분히 살피기



08 그 외 도움이 필요한 시간

이렇게 지켜주세요

- ✓ 빨래·물품정리 시 어르신 물품 함부로 처분 않기
- ✓ 개인 소지품을 존중하기
- ✓ 바쁘다는 이유로 요청을 무시하지 않기



09 나이트 상황

이렇게 지켜주세요

- ✓ 야간 호출에 짜증 내거나 방치하지 않기
- ✓ 투약·체위변경을 거르지 않기
- ✓ 관찰 소홀로 위급상황을 놓치지 않기



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



존엄을 먼저

어르신을 '돌봄의 대상'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. 모든 케어 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구하기.



바쁨이 변명이 되지 않게

업무가 몰려도 재촉·방치·거친 손길은 금물. 시간이 부족하면 동료·시설장과 분담하기.



작은 징후도 그냥 넘기지 않기

멍·욕창·위축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기록하고 즉시 보고. 동료의 학대도 못 본 척하지 않기.



나부터 점검하기

무심코 한 말과 행동이 학대일 수 있음. 일과 체크리스트로 스스로를 돌아보기.

학대를 발견했다면 — 신고와 대응



노인보호전문기관 **1577-1389**

긴급·위급 상황은 112 · 학대 의심도 신고 대상입니다 (24시간)



1. 발견·기록

이상 징후·정황을 사진·메모로 구체적으로 남기기



2. 증거 확보

'나비새김' 앱으로 사진·영상·녹취
익명 신고 가능



3. 신고

1577-1389 또는 112. 종사자는
신고의무자임



4. 보호

피해 어르신 안전 확보, 전용쉼터(전국 20곳) 연계



기억해 주세요

노인학대는 '설마'가 아니라 '범죄'입니다.

우리의 작은 관심과 점검이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킵니다.

2025 정부 대응 · AI·ICT 상시 모니터링 확대 ·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· 학대 판정 시설 평가등급 하향·가산금 제외 · 전용쉼터 20곳
확충

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 | 긴급신고 112 | 나비새김 앱